

#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2025. 1.

## 일러두기

- 본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설명서』는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2025년 중도정산에 활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2025년 1, 2월 나이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전국 교육청, 산하기관 및 11,000여개 각급 학교의 77만 교직원의 급여 업무 처리에 활용됩니다.
- 교육청 및 학교 급여 담당자는 본 설명서 전체를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대상자(교직원)는 설명서 Ⅱ-5(41~57page)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이후 1월 15일(예정)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도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작업 기능은 현재도 가능)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사용자설명서]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계속 갱신됩니다.
- 연말정산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로 등록 해주시거나,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b>I .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요</b> .....	<b>1</b>
1.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	1
2.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16
<b>II .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b> .....	<b>17</b>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	17
2. 연말정산 기준 확인 .....	19
3. 연말정산 대상자 및 자료생성 .....	21
4. 연말정산 생성 자료 확인.....	24
5.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	41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	44
6. 개인별공제자료 확인 및 검토 .....	58
7. 연말정산 처리 .....	65
<b>III . 참고사항</b> .....	<b>74</b>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74
2. 서식 변경사항.....	81
3.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88

# I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input type="radio"/>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input type="radio"/>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소득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p>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input type="radio"/>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input type="radio"/> (한도) 월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p> <p><input type="radio"/>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p> <p>*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p> <p><input type="radio"/> 연 500만원 → 연 700만원</p> <p>-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p> <p>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p> <p>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p> <p>*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p>

<적용시기>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600만원~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input type="radio"/>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input type="radio"/> 기준시가 6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input type="radio"/>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추 가>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input type="radio"/>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 손자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input type="radio"/>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input type="radio"/>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적용시기> 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개 정
<p>□ 의료비 세액공제</p> <p>○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li> <li>-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공제율) 15%</p> <p>○ (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li> <li>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li> </ul>	<p>□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li> <li>-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li> </ul> <p>*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li> <li>② (좌 동)</li> </ul>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input type="radio"/>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input type="radio"/>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9)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input type="radio"/> 사택제공 이익 등 <input type="radio"/>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input type="radio"/>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li> <li>①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li> <li>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p>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li> <li><input type="checkbox"/>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li> <li><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li> <li><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li> <li><input type="checkbox"/> (좌 동)</li> <li><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li> <li>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li> </ul> </li> </ul>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방식 변경</li> <li><input type="checkbox"/>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li> </ul>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대상 기부금</p> <p><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p> <p><input type="checkbox"/>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p> <p>①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p> <p>②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p> <p>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p> <p>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p> <p>*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p>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④ 위탁자 등*이 ①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p> <p>* 위탁자 +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p>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개 정
<p>□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p> <p>○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p> <p>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p> <p>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p> <p>○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p> <p>○ (일반기부금)</p> <p>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p> <p>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p> <p>○ 고향사랑기부금 추가</p> <p>    - (좌 동)</p> <p>○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p> <p>○ (일반기부금)</p> <p>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p> <p>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적용시기> 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4)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의 범위</p> <p>○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p> <p>○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 + ②)</p> <p>①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 × 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p> <p>②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 범위 조정</p> <p>○ (좌 동)</p> <p>○ (좌 동)</p> <p>① 5만원 → 8만원 - (좌 동)</p> <p>② (좌 동)</p> <p>○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p>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p> <p>*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p>	<p><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p>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유인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input type="checkbox"/> (좌 동)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math display="block">[\text{출자금액} \times \text{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 \times 10\%</math> <p style="margin: 0;">*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p> </div>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대상>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20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input type="radio"/>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5.12.31.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input type="radio"/> (좌 동) - 연 300만원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96조의6)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li> <li>○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li> <li>○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적용기한) 2023.12.31.</p>	<p><input type="checkbox"/>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p> <p>* 공모 리츠의 경우 전환가입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계좌 유지)에 가입</li> <li>② 기존 펀드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li> <li>③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li> </ul> <p>○ 2024.12.31.</p>

<적용시기> 20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input type="radio"/>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input type="radio"/>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input type="radio"/>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750만원 → 1,000만원  <input type="radio"/> (좌 동)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내수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신설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input type="radio"/> (좌 동)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li> <li>○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li> <li>○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li> <li>○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li> <li>○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li> <li>○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li> </ul>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2024년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내용	예시	비고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41,000,000	자동산정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월20만원 이내,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연장근로, 식비(월 20만원 이하),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 보육수당(월20만원 이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 1,00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신용카드공제 적용 시 활용	40,000,000	자동산정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1,25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 한도 적용 기준	28,750,000	자동산정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50, 추가공제(경로100, 장애인200, 부녀자50, 한부모100)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공적), 주택자금(원리금,이자),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자임금삭감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4,750,000	※ 나이스 등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000,000	자동산정																											
(X) 기본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 구간</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의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15%</td> <td>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8%</td> <td>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40%</td> <td>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2%</td> <td>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2,520,000	자동산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520,000	자동산정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70%(청년 90%)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초과30%(74/66/20 한도) ○ 자녀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 퇴직연금, 연금저축 12%(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자는 15%)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일반-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15%(100만원 추가 한도) - 의료비(총급여액의3% 초과액) : 일반15%,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 - 교육비 : 15% / 기부금 : 정치자금, 특례, 우리사주, 일반(종교), 일반(종교 외) ○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미신청시) ○ 납세조합공제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95-97년),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 : 17%(55백만원이하), 15%(8천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1,000만원 한도	1,400,000	※ 나이스 등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120,000	자동산정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1,970,000	자동산정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850,000	자동산정																											